

● 보수규정시행세칙(040201)

제정 1997. 12. 1. 시행세칙 제 3호 개정 2011. 12. 30. 시행세칙 제344호 개정 2016. 9. 9. 시행세칙 제449호
 개정 2000. 3. 31. 시행세칙 제 7호 개정 2012. 3. 30. 시행세칙 제350호 개정 2016. 11. 28. 시행세칙 제455호
 개정 2003. 10. 15. 시행세칙 제101호 개정 2012. 9. 27. 시행세칙 제365호 개정 2016. 12. 27. 시행세칙 제461호
 개정 2007. 9. 28. 시행세칙 제228호 개정 2013. 5. 31. 시행세칙 제373호 개정 2017. 9. 28. 시행세칙 제467호
 개정 2007. 12. 28. 시행세칙 제236호 개정 2014. 10. 30. 시행세칙 제403호 개정 2017. 12. 21. 시행세칙 제470호
 개정 2008. 12. 18. 시행세칙 제252호 개정 2015. 12. 31. 시행세칙 제421호 개정 2018. 12. 31. 시행세칙 제497호
 개정 2009. 10. 1. 시행세칙 제287호 개정 2016. 3. 30. 시행세칙 제429호 개정 2022. 6. 3. 시행세칙 제608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보수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시의 보수계산) 규정 제5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망시의 보수 중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계산 지급한다. <개정 17.9.28>

제3조(결근자의 보수계산)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근자의 제수당 지급 제한중 가족수당은 제외한다. <개정 22.6.3>

제4조(비상시의 보수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리한 금융기관을 지정 계좌 입금시킬 수 있다.

제6조(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4장의 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16.9.9>
가. <삭제 16.9.9>
2. 직원평가급 <개정 12.9.27, 16.12.27>
가. 규정 제22조에 의한 직원평가급의 지급시 기준 보수(연봉)월액은 평가대상연도를 기준으로 산

정한다. <개정 16.12.27>

나. 성과평가는 근무성적평정, BSC평정, 다면역량평정을 종합하여 차등하며 반영비중은 사장이 정한다. <개정 17.9.28>

3. 장기근속수당 <개정 12.9.27>

가. 규정 제23조의 장기근속수당은 당해 봉급지급월의 1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4. <삭제 14.10.30>

5. 기술수당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 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수당의 지급은 등록일의 해당월부터 계산한다.

6.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가. 규정 제26조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일지(별지 1호 서식)를 작성 최종근무종료시까지 당직 책임자에게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간외근무 명령권자는 개인별 시간외 근무내역(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보수지급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도 “나”, “다” 항의 요령과 같다.

7. 연차휴가수당 <개정 12.9.27>

가. 취업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차휴가기간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사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다.

- 나. 취업규정상 휴가자와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병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간 2일,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8. <삭제 07.9.28>

9. 위험수당

- 가. 위험수당의 지급대상은 유해위험작업시 종사하는 직원에게 발령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나. 위험수당의 지급 구분은 “별표 1” 과 같다.

10. 가족수당

-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 제29조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00.3.31, 07.12.28, 08.12.18, 11.12.30, 12.03.30, 17.12.21>

- 나. “가” 목에서 “부양가족” 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세대를 같이 하는 자 또는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09.10.1>

1) 배우자

- 2) 본인 및 배우자의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개정 18.12.31>

-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개정 18.12.31>

- 5)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개정 16.11.28, 18.12.31>

- 다. 나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07.12.28, 16.11.28>

- 라.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

하여 부양하는 사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의 사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 마.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임·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부양가족 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장남 및 장녀인 직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을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9.10.1>

- 바.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 특기사항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9.10.1>

- 사.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7.12.21>

- 아. 사장은 사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사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1. <삭제 22.6.3>

제7조(퇴직급여의 지급) ① 퇴직급여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15.12.31>

- ② 유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8조(급여자료의 통보) ① 인사담당주무부장은 이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에 관계되는 사원의 임면사항은 발령 또는 임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무상황은 익월 5일까지 이를 급여담당 주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급여담당 주무부장은 제1항의 통보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정산처리 한다.

제9조(지급의 특례) 이 시행세칙에 의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부 칙<97. 12. 1>

이 시행세칙은 공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3. 31>

이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10. 15>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9. 28>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12. 28>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2. 18>

이 시행세칙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10. 1>

이 시행세칙은 2009. 10.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2. 30>

이 시행세칙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03. 30>

이 시행세칙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05. 31>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0. 30>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5. 12. 31>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3. 30>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9. 9>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

용한다.

부 칙<16. 11. 28>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12. 27>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9. 28>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12. 21>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12. 31>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6. 3>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6조 관련)】

위험수당지급구분표

갑 종	을 종
○ 전주상에서 통신선로의 가설 또는 보수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3,300볼트이상 의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자 ○ 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것	○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 지하 2미터 이상에서 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 작업에 종사하는 것 ○ 전압 5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지 1호 서식(제6조 관련)】

초과근무일지

년 월 일	근 무 자		초 과 근 무 일 지			결 재 (근무명령자)	확 인 (당직책임자)	비 고
	직 급	성 명	종 류	근무 시간	근 무 내 용			

※ 종류란에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별지 2호 서식(제6조 관련)】

()월 시간외 근무내역표

수 신 :

확인자 : 실·처·단장 인

직 급	성 명	금 액	청구인	일 자 시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별지 3호 서식(제6조 제10호 관련)】 <신설 09.10.1, 12.09.27, 16.11.28>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직 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 가족 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 업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자격요건상실 등)	
형 제 자 매 상 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 및 직장주소		비고
							제6조 10
							호 나목
							2) 괄호규
							정에 해 당자기재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장애등급 등 기재							
본인은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10호에 의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가족수당을 신고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